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신탁등기용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관련 납세자 권리 보호

1.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1447(2017.6.19)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신탁등기용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2017년도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6.1)하여 지방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납기 전 징수를 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재건축 단지 등 신탁등기가 일시에 집중되어 과세 관청에서 납기 전 징수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7년도 재산세 완납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정기분 부과지시 후에는 완납해야 납세증명서 발급됨)끝.

행정자치부



수신자 서울특별시(세제과장),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부산광역시(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세정담당관), 광주광역시(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세정과장), 울산광역시(세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세정담당관),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지방세운영과장,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지방세입정보과장,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세정정보부)

행정사무관 손병하 지방세정책과장 전결 06/22
김성기

협조자